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29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허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6.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20만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일탈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2011년 5월 11일자 18:00)

내 용 : <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결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 참 많죠? 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비부부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

비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앞서죠. 수요일의 알뜰정보 전해주시는 이분께 도움을 청해볼까요. 심○○ 기자, 잘 알아보면 알뜰하게 결혼하는 법, 있다고요.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결혼을 위해 쓰는 돈이 무려 1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이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사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써,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정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이 결혼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사진을 약 3초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초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공개된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되는 것을 신청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점, 평범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결혼식을 했다고 오인 받거나 진실과 다른 거짓 방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진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공중파로서 사회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일단 방영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인 점, 외주 제작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사례 30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부실공사에 대해 취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0)

내 용 : 어렵게 장만한 새 보금자리에 물이 줄줄 새고 얼음까지 언다면 마음이 어떻게겠습니까? 지은 지 2년여 밖에 안된 서울 은평 뉴타운이 이런 지경입니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서울 은평 뉴타운, 1만 5천 가구의 대단지입니다.

한 집 마루와 부엌 천장에서 물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받쳐 놓은 세숫대야를 금새 채웁니다.

베란다는 물바다입니다.

거실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쓰레받기로 연신 퍼냅니다.

▷피해 주민 : 차라리 지금 어떤 생각이나면 이게 물건이라면 반품하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다고요.

계속된 한파로 배수관이 얼어붙어 막히면서, 윗집에서 내려 보낸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 넘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의 다용도실은 바깥이나 다름없는 냉골입니다.

얼어붙은 세탁기는 뜨거운 물로 녹여 써야 합니다.

습기가 차는 '결로현상'으로 옷장 벽에 물이 흐르고 마룻바닥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김○○/피해 주민 : 화나죠, 욕 나오죠. 이게 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이렇게 만드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시행사측은 혹한 핑계만 달 뿐, 다용도실 같은 서비스 공간은 단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관계자 : 여기가 서울(도심) 온도보다 3, 4도씩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웠기 때문에 계속 얼어있는 상태죠.

참다 못한 주민들은 정부에 하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은 기약없이 하자 보수를 기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9일자 SBS-TV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목으로 서울 은평뉴타운의 하자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입주주민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돼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촬영 당시 아무런 요청사항도 들은 바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고는 오히려 신청인은 당시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시공사의 보수 등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

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는 위 동영상 자료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공표에 동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8.



사례 31

인터넷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업자’ 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82·88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인터넷 도박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취재했다면서 신청인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가로 비록 자신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집구조 등으로 지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어, 짱구방 운영업자로 오인되어 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미늘발 110억 원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내 용 : (전략)

수소문 끝에 우리는 실제 짱구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110억원 미스터리”편에서 제작진이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모 씨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모 씨는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한게임도박 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합니다.

이모 씨에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3일까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가. 제 목: ‘마늘밭 110억원 미스터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터리’ 관련 보도에서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만났다”고 하는 장면에서 노출된 인물은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한게임 도박 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1.항과 2.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터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일자 23: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2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93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연극배우 곽○○씨가 참가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이벤트에 관해 보도하면서 같은 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방송이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되어 수치심을 느꼈고, 이벤트 주관사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고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소개팅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했다며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老處女歌)'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내 용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9일까지 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2.



사례 33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31 손해청구
 신청인 : 박○○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11.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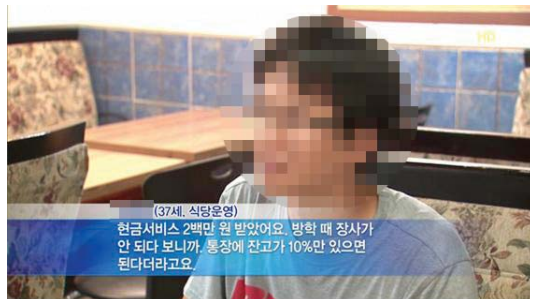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카드사 리볼빙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만 노출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상태의 얼굴과 함께 실명과 나이, 영업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수수료 내린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1:00)

내용: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9. 9.



사례 34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9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씨제이이엔엠(주) (tvN)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여름철 해운대 패션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tvN: 「롤러코스터」 프로그램 '해변탐구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4일자 23:00)

내용 : 올여름에도 더위를 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가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바닷가로 떠나봤어요.

롤러코스터 여름특집, '여름해변 남녀탐구생활'

먼저 바닷가를 찾은 해운대 패셔니스타를 탐구해봤어요.

바다 패션하면 비키니, 비키니하면 바다 패션이에요.

바닷가에선 역시 비키니패션이 대세였어요.

까만 비키니, 빨간 비키니, 노란 비키니, 초콜릿색 비키니.

세상의 비키니들은 여기에 다 모여있나봐요.

S라인 몸매를 뽐내기에는 비키니만한 게 없으니까요.

이때 왕꽃무늬 분홍 비키니를 입은 여자분이 눈에 띄어요.

베스트 사진을 찍기 위해 폴짝 뛰네요. 롤코도 함께 폴짝 뛰고 싶어요.

그 외에도 티셔츠와 코디한 비키니, 빨간색 프릴 비키니, 도트무늬 비키니 등등 해변가는 뷰티풀한 비키니의 천국이에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신청인은 tvN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파 일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에 떠있는 롤러코스터 제112화 내용 중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35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신부석 지정' 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20 손배청구
신 청 인 : 방 ○ ○
피신청인 : 한국정책방송원 (K-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임신부의 날 행사장 앞에서 시위중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행사를 비판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해당 행사를 홍보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 에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의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TV : (1) 「정책 오늘」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임산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18:30)

내 용 :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 공공장소에서 자리 양보 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데요.

그런데 오히려 임신 초기가 가장 힘이 들고 유산 확률도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들, 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형 변화가 많지 않은 임신 초기.

임신부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서울 행당동) : 임신 초기에는 배가 얼마 안 나오니까 노약자석 같은데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럼 저는 산모 수첩 꺼내서 괜히 더 표를 내고 그랬죠.

▷변○○(서울 청룡동) : 초기에는 오히려 정말 더 힘이 들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오히려 자리에 더 못 앉아있었어요.

임신 초기인 12주까지의 시기에는 태아가 산모에게 안정적으로 착상되는 시기로 입덧과 수면장애 등으로 임신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80% 이상의 유산이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 초기에는 임신부가 변화하는 신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전국의 보건소에서 초기 임신부들을 위한 위한 배려 엠블럼과 카드 등을 무료 배포합니다.

또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임신부 배려 엠블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 엠블럼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전시성 행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행사에 동조하는 참석자인 것처럼 비취지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영상은 신청인이 공공장소인 임신부의 날 행사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임이 인정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위 내용의 진의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이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주요한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청인의 시위 내용을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6.

사례 36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412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백만 원으로 변경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김정일 사망> 호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내 용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월 10일까지 계좌이체(○○은행000000-00-000000, 예금주 : 이○○)를 통해 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각 포털에게 각 포털이 2012년 1월 4일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정대상기사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을 각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2년 1월 11일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 8.



사례 37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중재95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8.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서 15년 만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그대로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7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경향신문 : 『15년 만에 쓴 학사모 ...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내 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받아든 만학도가 있다. 주인공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최 ○○씨.



최씨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보통 대학을 8학기에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최씨의 30학기는 방송통신대 설립 이후 최장 기록이다. 방송통신대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저렴하고, 졸업 연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씨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어린 학생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에 유아교육을 추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유아교육과는 교육학이나 교육심리 등 교직 과목 이수가 필수이고, 리포트 등 과제물도 많았다. 최씨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느라 스터디 모임 등에 참여하기 어려워 모든 과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최씨가 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30학기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 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이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금 1,700,000원을 지급하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011. 2. 24.자 29면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21.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3.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가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5.

